

●排他的經濟水域法^(1996·8·8)
(法律第5151號)

第1條 (排他的經濟水域의 設定) 大韓民國은 이 法에 의하여 海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協約”이라 한다)에 規定된 排他的經濟水域을 設定한다.

第2條 (排他的經濟水域의 범위) ①大韓民國의 排他的經濟水域은 協約의 規定에 맞추어 領海및接續水域法 第2條에 規定된 基線으로부터 그 外側 200海里的 線까지에 이르는 水域중 大韓民國의 領海를 제외한 水域으로 한다.

②大韓民國과 對向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國家(이하 “關係國”이라 한다)간의 排他的經濟水域의 境界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際法을 기초로 關係國과의 合意에 따라 劃定한다.

第3條 (排他的經濟水域에 있어서의 權利) 大韓民國은 排他的經濟水域에서 다음 各號의 權利를 가진다.

1. 海底의 上部水域, 海底 및 그 下層土의 生物이나 無生物등 天然資源의 探查·開發·보존 및 관리를 目的으로 하는 主權적 權利와 海水·海流 및 海風을 이용한 에너지生産등 經濟적 開發 및 探查를 위한 그밖의 活動에 관한 主權적 權利

2. 다음 各目에 관하여 協約에 規定된 管轄權

가. 人工섬·施設 및 構造物의 設置·사용

나. 海洋科學調查

다. 海洋環境의 보호 및 보전

3. 協約에 規定된 그밖의 權利

第4條 (外國 또는 外國人의 權利 및 義務) ①外國 또는 外國人은 協約의 관련 規定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大韓民國의 排他的經濟水域에서 航行·上空飛行의 자유, 海底電線·管線敷設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國際적으로 適法한 그밖의 海洋利用의 자유를 享有한다.

②外國 또는 外國人은 大韓民國의 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 權利의 행사와 義務의 이행을 함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의 權利와 義務를 적절히 고려하고 大韓民國의 法命을 준수하여야 한다.

第5條 (大韓民國의 權利行使등) ①外國과의 協定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

1

하고 大韓民國의 排他的經濟水域에서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를 행사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 大韓民國의 法令을 적용한다. 同條第2號 가목의 人工섬·施設 및 構造物에서의 法律關係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第3條의 規定에 의한 大韓民國의 排他的經濟水域에 있어서의 權利는 大韓民國과 關係國간에 별도의 合意가 없는 경우 大韓民國과 關係國의 中間線 外側의 水域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中間線”이라 함은 그 線上의 各點으로부터 大韓民國의 基線상의 가장 가까운 點까지의 直線距離와 關係國의 基線상의 가장 가까운 點까지의 直線距離가 같게 되는 線을 말한다.

③大韓民國의 排他的經濟水域에서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를 침해하거나 당해 排他的經濟水域에 적용되는 大韓民國의 法令을 위반한 嫌疑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關係機關은 協約 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追跡權의 행사, 停船·乘船·檢索·拿捕 및 司法節次를 포함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1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1996·9·4 大總統令 제15145호에 의하여 1996·9·10부터 시행]